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의 시행 및 전망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된 후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16. 3. 18. 새로운 기촉법(이하 '신 기촉법')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 기촉법은 적용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하였습니다. 신 기촉법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신 기촉법을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제정하여 2016년 4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 기촉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촉법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

구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의 총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출자전환시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 제한 특례 및 액면미달 발행의 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웠습니다. 신 기촉법은 모든 기업이 기촉법의 적용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촉법 시행령(안)은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고려하여 신용공여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은 여전히 기촉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2. 기촉법 참여범위를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

구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만 기촉법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채권금융기관만 참여하는구조조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 기촉법은 공제회, 기금, 외국금융기관 등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는 모두 기촉법 절차에 참여하도록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구 기촉법은 적용대상인 신용공여의 범위가 모호하여 신용공여액의 포함 여부를 두고 채권금융기관 간에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 기촉법 및 시행령(안)은 상거래채권을 보호하는 기촉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금융거래로 한정하고, 금융거래의 개념을 "거래 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대가로서 이자, 보증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반대급부를 수취하는 목적의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구조조정 이해관계자들의 기본권 강화

구 기촉법은 반대채권자, 소액채권자 및 부실징후기업 등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 기촉법은 구 기촉법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결의하였을 경우에만 결의에 반대하는 자에게 반대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던 것과 달리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동관리절차의 연장 등의 경우에도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매수가액은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함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소액 금융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채권자의 의결권이 총 금융채권액 중 7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를 포함하여 총 금융채권자 수의 40%의 찬성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신 기촉법은 부실징후기업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용위험평가시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4. 향후 전망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절차는 크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등 법정 구조조정절차와 채권단 자율협약과 같은 사적 구조조정절차로 나뉩니다.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절차는 이들 절차의 중간적 영역에 속하면서 그간 존폐 여부를 두고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계속 생명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 기촉법은 과거 기촉법상 지적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향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워크아웃 및 도산절차가 계속되면서 워크아웃을 포함한 도산 분야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상적 거래행위 및 M&A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은 워크아웃 기업과 금융채권자에 대한 다수의 법적 자문 및 소송업무와 워크아웃 기업의 M&A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구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57 E-Mail. yklee@shinkim.com
- 이동건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97 E-Mail. tglee@shinkim.com
- 김남성 변호사 TEL. 02 316 1709 E-Mail. nskim@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의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